

공공건축, 삶을 짓다

박철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건축의 시대, 공공건축의 가치 찾기

자유롭고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 사회라면, 민족이나 겨레라 불러도 좋을 상상의 공동체가 실제 작동하는 지리적 공간인 영토에서 상정하는 바람직한 이상은 자치와 분권일 듯싶다. 이런 명제로부터 분권시대 혹은 지방화시대를 21세기의 가치로 꼽곤 한다.

분권시대나 지방화시대를 언급할라치면 늘 등장하는 현실적 의제가 바로 여러 방면에서 들춰지는 지역 사이의 격차다. 지역 간 편의시설의 격차, 대도시권과 중소 지방도시의 경제 격차, 나아가 문화 활동과 관련 시설 접근성 격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항목들을 여러 층위에서 언급한다. 때론 이를 차별의 지표로 삼아 균형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기반시설의 차이와 지역 경쟁력의 편차로 번역해 사당치레가 되기 십상인 요란한 행사나 거창한 건축물을 통해 해소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일상의 기반이자 지역 경쟁력의 요체이며, 지역 고유의 물리적 자산으로 간주될 법한 공공건축의 무기력함이다. 공공건축이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을 짓는 토대며, 장소에 고착된 시민 정신의 정수라는 명제와는 달리 빈곤과 누추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의 자산이건만 누구도 크게

문제 삼거나 시뮬거리로 간주하지 않는다. 습속을 통해 굳어진 비용과 속도에만 관심을 두거나 규모의 거대함과 행사의 요란함만을 경쟁의 지표로 삼는다.

법률이 현재를 추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더라도 1990년을 기점으로 ‘문화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양적 효율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건설이 아니라, 매번 다른 고민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하는 건축적 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축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지만 건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건축기본법’이 2007년이 돼서야 비로소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만시지탄이다. 이 법률로 인해 ‘건축정책’이라는 용어가 구체화됐고, 건축정책의 일차적 관심 대상인 ‘공공건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률 제정 이후 1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각종 통계가 아예 없거나 미진하다는 사실은 어쩌면 법률이 현재를 앞섰기 때문은 아닐까 질문하게 한다.

굳이 이 질문에 답을 찾자면 20세기의 관행과 습속의 강고함에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진단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경제 환원주의 방식으로 논의를 전환해 보자면 지금도 매년 약 6,000동의 공공건축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으며, 그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 건축공사 기성액의 15% 내외를 차지한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인데 더욱 의미를 부여해야 할 전제는 이들 공공건축물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반이 돼 삶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니 그 가치는 이루 셀 수 없다.

특히 공공건축사업의 86% 정도가 총괄 조정이나 관리체계를 갖추기 못한 상황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14%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른다고는 하나 여전히 건축 규모와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엄밀하게 진단해 문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법정부협의체’^{**}를 발족하였으니 그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

* 박인석(2017), 「건축이 바꾼다」, 서울: 마티, p.34.

** 법정부협의체의 구체적 명칭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법정부협의체’며 공공건축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과 대책의 구체적 이행 및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위해 협의체 산하에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공공건축의 기획 과정에는 당연히게도 전체의 열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국가기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공공건축 수급관리 기본계획’이다. 재정의 효과적인 투입과 공공청사의 노후과정 관리 및 품격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물론 건축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이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에서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다.

지자체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디자인 관리체제 구축은 「건축기본법」에 담긴 ‘민간전문가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현재 확산 중인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는 기존의 관행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체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린 사업을 개별적 사업으로 분할해 기획-설계-시공의 개별화를 전체의 틀 안에서 추구하려는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니 당연히게도 건축의 시대에 부합하는 일이다.

물론 좋은 건축물의 생산에 목표를 둔 설계발주제도의 확립 역시 시급하다. 통상적 조달 방식으로 이뤄지는 가격입찰제도는 효율적 재정 집행이라는 눈가림이 만든 산물이어서 이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이를 구현할 심사제도 역시 예외가 인정돼선 안 된다. 더불어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역시 설계의 최종심급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SOC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적 공간이자 장소다. 공공건축의 최종 방어선이며, 지역의 고유성과 동네의 품격, 나아가 개인의 삶을 생활SOC가 규정한다는 사실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규모와 치레에 함몰된 지난 세기의 시선을 거둬야 한다. 게다가 생활SOC는 공공건축의 핵심적 가치다. 집과 도시에서 그리고 일자리로부터 비롯되는 생기를 기반으로 삶은 이어진다. 공공건축은 이를 지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 단위로서 지역사회의 안녕을 보장하는 베이스캠프다. 피렌체의 시민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 며칠 머물면 돔시크(dome-sick)로 고생한다고 하지 않는가. 공공건축은 곧 삶을 짓는 바로 그곳으로, 존재와 거주를 넘어 온전한 시민으로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는 터전이다.